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196호

붙임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96호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6조제8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을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으로, “지방세의 수입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에”를 “여수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세외수입(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말한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제1항 및 제3항의 ”특별한 공적“이란”으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6. 제1항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부상금이 지급된 제안 내용은 특별한 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장, 납부 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여수시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

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 다른 자치단체에서 변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를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6조제1항제4호의”를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을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1년차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을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2년차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을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3년차 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에 따른”을 “세외수입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2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2항제2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제1항의 규정을”

을 “제1항제2호를”로 한다.

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1

4.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급 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3.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46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자 등”을 “신고자”로, “신고 등과”를 “신고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를 신설한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심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 위원 9명 중에서 위촉(외부) 위원을 5인 이상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업무 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삭제>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6조제1항제1호”를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 중 부과, 부과 취소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제보내용	제출일자		제출부서	
	제보내용요약			
통지받은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 등			
포상금 신청	금액			
	산출근거			
계좌신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p>「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첨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신 내 고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 약	
통 지 받 은 액	징 수 액	
포 상 금 청 신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p>「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산세포함)	가 산 금	
합 계					
버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 방 세 징 수 에 특 별 한 공 적 등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여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산세포함)	가 산 금	
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지난 연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별지 제9호서식)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부과자(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일자	포상금액	포상금지급일	과장확인
직급	성명 (생년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성명	생년 월일				

(별지 제10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징수내역					체납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과장 확인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성명	생년 월일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의 수입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 여수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 -----.</p>
<p>제2조(지급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부상금이 지급된 제안의 내용은 특별한 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세외수입(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말한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 및 제3항의 "특별한 공적"이란 ----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아 해당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

2. 그 밖에 세외수입의 징수 또는 증대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영치 등

사.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3.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거나 신고하여 채납액을 징수

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는 사유로 채납액을 징수하거

나 징수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채

납처분 관련 업무

6. 제1항제5호의 경우는 「지방

세기분법」 제146조제1항제5

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

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시 제

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부상금이 지급된 제안 내용은

특별한 공적으로 보지 아니한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특별한 공적이 없이 채납자

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장, 납

부 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여수시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 다른 자치단체에서 변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

<신 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경우 :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채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채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채납액의 100분의 1

나. 채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채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채납액의 100분의 3

다. 채납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채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

가. 지난 연도 채납액에서 1년차의 -----

나. 지난 연도 채납액에서 2년차의 -----

다. 지난 연도 채납액에서 3년차 이상의 -----

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
한 체납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신 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
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
의 10
2.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된 금액

- -----
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세
입증대액의 100분의 1

4.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
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
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
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외수입 관련 -----
-----.

1. 제2조제1항제6호-----

2. 제2조제1항제7호----- 제1
항제2호를 -----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포상금(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사유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1인당 분기별 300만 원

<신 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들의 신원 등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상금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급한도) -----

-----.

1. 지급 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3.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신고자-----
----- 신고와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사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사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사무 담당부서의 장, 지방세부과사무 담당부서의 장, 지방세징수사무 담당부서의 장, 회계사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포상금은 「지방세기

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①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 위원 9명 중에서 위촉(외부) 위원을 5인 이상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를 이유로 환급된 경우

②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제1호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부과 취소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

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
하여야 한다.